



# 윤리 헌장 및 실천규범

REV. NO	개정일자	개정내용	비고
0	2024.06.30	관리문서 제정	

## 제 1 조 (제정목적)

세코닉스는 광응용 기술로 안전과 편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향한다.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, 세코닉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,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였다. 세코닉스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은 세코닉스 국내외 법인, 자회사 및 손자회사, 합작투자사(Joint Venture)를 포함하며, 세코닉스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,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.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, 정책,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, 관련 규정, 정책,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,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. 본 윤리현장 및 실천규범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세코닉스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## 제 3 조 (임직원 윤리)

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,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.

### 1. 뇌물

금전,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,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,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.

### 2. 청탁

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.

### 3. 이해관계 상충

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,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

### 4. 내부자 거래

직무수행을 통해 직, 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, 지식, 정보를 누설하거나,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.

## 5. 직장윤리

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,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.

## 6. 직권남용

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,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
## 7. 문서작성 및 보고

은폐, 축소, 과장,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, 내,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.

## 제 4 조 (공정한 경쟁과 거래)

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,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.

### 1. 반독점

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,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2. 담합

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.

### 3. 부정경쟁

경쟁업체, 협력업체,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### 4. 자금세탁

고객, 파트너, 협력업체,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5. 지식재산권

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,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
### 6. 조세

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,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.

### 7. 조달

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,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 8.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

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, 수출제한,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. 수출제한, 경제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, 필요시 고객사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한다.

## 제 5 조 (고객가치 실현)

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,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.

### 1. 고객안전

연구개발, 원자재 조달, 생산, 판매 및 유통, 판매 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.

### 2. 품질

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3. 완전한 정보제공

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,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
### 4. 개인정보 보호

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,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 5. 고객의견 수렴

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.

### 6. 제조물 책임

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,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.

## 7. 위조 부품 유입방지

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, 사용하지 않으며,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, 판매하지 않는다.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,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한다.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,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# 제 6 조 (임직원 존중)

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,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
### 1. 인권

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,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.

### 2.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

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,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.

### 3. 차별

국적, 출신지역, 인종, 성별, 연령, 문화, 종교, 장애, 학력,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.

### 4. 동등한 기회

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,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.

### 5. 직장 폐롭힘

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, 성희롱, 따돌림,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, 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

### 6. 안전 및 보건

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, 직무상 사고 및 부상, 재난, 재해,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.

### 7. 일, 가정 양립

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# 제 7 조 (지속가능성 추구)

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.

### 1. 지속가능한 발전

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,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(SDG) 달성을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

### 2. 환경

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, 사업 전 영역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.

### 3. 사회공헌

우리 사회,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,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.

### 4. 이해관계자 참여

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,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.

### 5. 기부 및 후원

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,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.

### 6. 주주가치

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.

### 7. 정보공개

재무적,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.

## 제 8 조 (경영시스템)

### 1. 조정 책임자의 책무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.

### 2. 조직 및 보고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,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.

### 3. 모니터링 및 실사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,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### 4. 내부통제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, 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, 정기 또는 비 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

### 5. 내부 고발자 보호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, 내부 고발자가

불합리한 대우나 차별,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
#### 6. 개정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.

#### 7. 교육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,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#### 8. 처리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.

#### 9. 위반 정보공개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

### 제 9 조 (부록)

#### 1. 윤리 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

- ▶ 인터넷 제보 : sekonix.com
- ▶ 전 화: 031-928-8100
- ▶ 이메일: hwwhb87@sekonix.com
- ▶ 우 편: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862번길 28 (주)세코닉스 인사팀

#### 2. 참고문헌

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은 여러 국제 인권규범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며, 아래의 선언 및 협약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

- ①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(세계인권선언), UN General Assembly, 1948.
- ②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, UN Global Compact
- ③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'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, ILO (1998).
- ④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, OECD (2019).
- ⑤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, UN General Assembly (2013).
- ⑥ Paris Agreement, UNFCCC (2015).
- ⑦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, OECD (2011).

- ⑧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, Drive Sustainability (2017).
- ⑨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, UNGC (2011).
- ⑩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, ISO(2010).
- ⑪ UN SDGs (<https://sustainabledevelopment.un.org/>).
- ⑫ CDP (<https://www.cdp.net/en>).